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의 각군 참모총장 수준 격상〉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12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기존의 ‘해군참모총장 추천 → 국방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구조에서, ‘국방부장관 추천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여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u>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u>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 ----- ----- ----- ----- <u>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¹⁾.

1) 「군인사법」 제19조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최근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재편하고, 서북도서사령부 작전 지원을 위한 전담 참모조직 설치 및 작전 여건 보장 계획을 보고²⁾하는 등 해병대의 독립적 작전역량 확대와 관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제도를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첫째, 각 군간 지휘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해병대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작전 임무(상륙전, 도서 방위 등)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사체계상 해군의 하위 조직으로 편성되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사령관을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절차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군종 간 형평성 측면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해병대 장병 사기 진작 및 조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효과가 기대됨.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가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격상될 경우, 해병대 조직의 사기 및 장병들의 결속력 제고에 긍정적인

2)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국방부, 2025.6.19.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군조직법」³⁾상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에 소속되며 해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지휘체계를 전제로 할 때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면 법률 간 정합성과 권한 위임 구조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해병대사령관은 국군 내 서열 8위에 해당하는 중장급 직위인 반면, 그보다 상위 서열⁴⁾의 대장급 지휘관들(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군부사령관)도 현행 ‘참모총장 추천 → 국방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⁵⁾ 절차를 따르고 있어, 개정안

3)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4)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5)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이하 생략)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하 생략)

에 따르면 국군 내 서열과 임명 절차의 격식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⁶⁾.

□ 둘째, 개정안의 논의는 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하는 ‘제4군 체제’ 도입 여부와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현재 국방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또는 회부⁷⁾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해병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하지 않고 해병대의 위상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준(準) 4군 체제’를 검토 중이므로,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 또한 관련된 정책적 검토 및 선행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한편, 해병대사령관 임명의 경우 중장 진급 및 보직 임명이므로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대장 계급의로의 진급은 ‘국방부장관 추천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쳐야 함.

「군인사법」 제25조 (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210687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210688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2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210691호)

※ 국방위원회 심사결과: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제2210689호)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 회부(미상정)

문 의 처
02)6788-5310